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유한회사 발루프코리아(이하 '회사'라고 합니다)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(이하 '몰'이라고 합니다)를 통하여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선불전자지급수단(할인쿠폰)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(이하 통칭하여 '전자금융거래서비스'라 합니다)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,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회사와 이용자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정의)

-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 -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·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.
 - '전자지급수단'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,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.
 - '전자지급거래'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(이하 '지급인'이라고 합니다)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(이하 '수취인'이라고 합니다)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.
 - '전자적 장치'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, 자동인출기기, 지급용단말기, 컴퓨터,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.
 - '접근매체'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시도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.
 - 은행이 발급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
 -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
 - 은행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
 -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
 - 가속 또는 나뭇잎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
 - '전자문서'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, 송신·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.
 - '거래지시'라 함은 이용자가 이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.
 - '오류'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이 약관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.
 - '이용자'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이 약관에 따라 사이트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.
 - '이용자번호'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.
 - '비밀번호'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.
-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제3조 (약관의 명시 및 변경)

-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이 약관을 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.
- 회사는 이용자가 요청하면 전자문서를 전송(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)하는 방식으로 이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그 약관의 내용을 설명합니다.
-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 및 몰에 게시하여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. 다만,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몰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.
- 회사는 제 3항의 고지나 통지를 할 경우 "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"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.
- 이용자가 제4항에 따른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
제4조 (이용시간)

-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단, 금융회사 및 그 밖의 결제수단 발행업자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, 점검 및 그 밖의 기술상 필요나 금융회사 및 그 밖의 결제수단 발행업자 사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중단 시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해당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해당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시스템 장애복구, 긴급 프로그램 보수,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.

제5조 (접근매체의 관리)

-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,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.
-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, 접근매체의 도용, 위조,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.
 -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
 -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
 -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, 노출, 방지하는 행위

제6조 (거래내용의 확인)

- 회사는 몰의 서비스화면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역(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)을 포함합니다)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, 이용자의 서면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우편 또는 직접 교부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.
- 제 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 -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
 - 거래의 종류 및 금액
 -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
 - 거래일시
 - 전자적 장치의 종류와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
 -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
 -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
 - 전자금융거래법 제 15조 제1항에서 정한 지급인의 출금 통의에 관한 사항
 -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
 - 이용자의 출금 통의에 관한 사항
 -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
- 제 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 -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거래에 관한 기록
 -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
 -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기록
-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 HR/Fin/Admin (junghwa.kim@balluff.co.kr, 031-8064-1756)

제7조 (오류의 정정 등)

-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,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.

제8조 (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)

-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,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.
-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와 보존방법은 제 6조 제2항, 제3항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.

제9조 (거래지시의 철회 등)

- 전자지급거래를 한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몰의 서비스화면에 게시된 고객센터의 연락처 또는 몰의 고객센터의 기능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 서비스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이 약관 제 17조와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.
-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.

제10조 (비밀보장의 의무)

회사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,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신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외의 사용하지 않습니다.

제11조 (회사의 책임)

-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 중 구매금액의 10배의 한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.
 -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(단,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 주체이거나 사용, 관리 주체인 경우)
 - 계약 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
- 회사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 -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로서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
 -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거나,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지한 경우
 - 법인(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제 2항에 의한 소기업)을 제외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장치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지키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
- 이용자로부터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천재지변,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, 화재, 통신장애,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할 수 없거나 지연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처리할 수 없거나 지연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통지(금융기관 또는 결제수단 발행업자나 통신판매업자가 통지한 경우를 포함)했을 때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, 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때에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중단 일정과 중단 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.

제12조 (분쟁처리 및 분쟁조정)

-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서 서비스화면에 게시된 고객센터의 연락처 또는 몰의 고객센터의 기능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 제기, 손해배상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이용자가 회사에 분쟁처리를 신청했을 때 회사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.
- 이용자는 제2항에 따른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,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제13조 (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)

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별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, 시설,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서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.

제14조 (약관적용의 우선순위)

-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서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.
-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-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,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,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,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.

제15조 (관할 및 준거법)

-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.
- 이 약관의 해석·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.

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

제16조 (정의)

-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'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'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(이하 '재화 등')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 - '이용자'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
제17조 (거래지시의 철회)

- 이용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경우, 이용자는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상의 입금기록 또는 전자적 장치에의 입력이 끝날 때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.

제18조 (접근매체의 관리)

- 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,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.
 -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
 - 대가를 수수(授受)·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·전달·유통하는 행위
 - 법원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·전달·유통하는 행위
 -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
 - 1차부터 제4호 중 하나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 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.
-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지해서는 안 되며,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.
-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

공시일자: 2018년 02월 01일
시행일자: 2018년 02월 01일